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임
-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출고객은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신용보험이 활성화된 이들 국가에서는 상품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상품판매 관행 개선,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공시, 역선택 방지를 위한 상품설계 등이 이루어짐
- 향후 국내에서도 건전한 신용보험시장 형성을 위해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사망(자살 제외), 심각한 장애, 중대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요율산정 규제가 필요함
 - 끝으로 불완전판매 및 역선택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험이란 대출고객이 사망 등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임
 - 신용보험은 채무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채무가 소멸하여 유족 등의 생계안정 확보가 가능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
 - 2018년 2/4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약 1,500조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대출금리 인상 시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가계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가계부채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계층의 이자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¹⁾
- 최근에는 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채무의 상속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²⁾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중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속성 보험(찍기) 금지 규정³⁾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청약을 권유할 경우는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보는데, 신용생명(손해)보험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에 본고에서는 가계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용보험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신용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국의 운영현황 및 감독제도를 토대로 국내 신용보험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3. 29), “금융안정 상황(2018년 3월)”

2) 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2018. 7. 30),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3)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2. 국내 신용보험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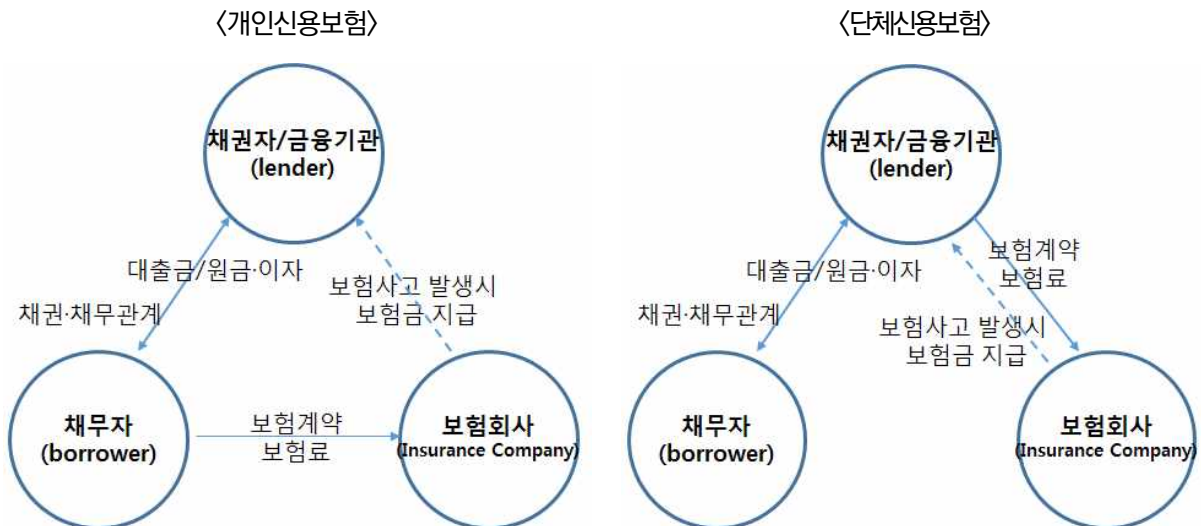


가. 신용보험의 개념

■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이하 ‘신용보험’)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해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임

- 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대출자(채무자)이며, 계약자는 개인(채무자) 또는 신용공여기관(채권자)⁴⁾임
 - 금융회사가 직접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이의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를 대신하여 잔액채무를 금융회사에 보상하는 단체신용보험형태가 일반적임
- 사망, 상해·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대출고객의 채무상환 불이행 시 대출원리금 또는 월 납입금을 담보하며, 계약형태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구분됨

〈그림 1〉 신용보험의 유형



4) 신용공여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는 물론 자동차할부금융, P2P대출자도 포함함

■ 국내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출보증보험⁵⁾이 있으나, 대출보증보험은 신용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대출보증보험은 보험사고(채무불이행) 발생 시 보험회사가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채무자 또는 유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⁶⁾ 반면, 신용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가 상환되고 채무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구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신용보험이나 보증보험 모두 대출과 관련되는 상품이지만 신용보험은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으로 은행 판매가 가능하지만 대출보증보험은 허용되지 않음

〈표 1〉 개인신용보험과 대출보증보험 차이

구분	신용보험	대출보증보험
보험사고	사망, 장애 등	채무불이행
채무변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후 구상
방카슈랑스	1단계 허용	불가능

■ 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또 다른 상품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가 있음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매월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카드회원으로부터 받고, 회원이 사망, 장기입원 등 특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상품임
 - DCDS의 경우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서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과도한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한편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 감독당국 등에 의해 약관 및 보험요율이 검증받아 채무면제 유예 상품의 수수료에 비해 보험요율 수준이 낮음
 - 또한, 채무의 면제나 유예가 아니라 채무 자체를 변제해 줌으로써 고객의 부채에 대한 부담 및 부채의 상속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5)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 관련) 〈부표 1〉에서는 보증보험상품을 신원보증(Fidelity), 채무이행보증(Surety), 선급금이행보증(Advance Payment), 신용보험(Credit)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6)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표 2〉 국내 신용관련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

구분	신용보험		대출보증보험
	개인신용보험	단체신용보험	
담보위험	사망, 장애, 질병, 실업 등		대출고객의 채무불이행
보험계약자	채무자(대출고객)	대출기관(금융기관)	대출기관(금융기관)
피보험자	채무자(대출고객)		대출기관(금융기관)
보험회사 역할	채무변제(보험금 지급)		채무변제 후 구상
보험료 납입형태	개인이 보험회사에 납부	대출기관이 보험회사에 납부	대출기관이 보험회사에 납부

나. 시장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상품이 등장하였으나,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대한보증보험이 1989년 신용카드신용보험, 1995년 6월 주택임대차신용보험 등을 인가받아 판매하였으며, 한국보증보험은 1995년 10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을 판매함⁷⁾
- 1997년 2월, 주택은행과 한국생명이 업무제휴를 통해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였으며,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 판매가 허용됨⁸⁾
 - 생명보험회사 중 메트라이프생명이 2016년 3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2017년 9월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⁹⁾, 현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이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자동차할부금융 및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신용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음¹⁰⁾
- 국내의 경우 신용보험계약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으나, 2017년 기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수입보험료는 4억 5,200만 원이며, KB손해보험의 신용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기준 13억 원 규모로 미미한 수준임¹¹⁾

■ 또한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방카슈랑스 규제(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이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은행 등 대출기관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계약의 기준에 저촉될 것에 대한 우려로 단체신용보험의 판매에 소극적임¹²⁾

7) 이호영·박근홍·김영부(1998), 『신용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8)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3. 1. 17),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 매일경제(2003. 8. 17), “사망 때 대출금 대신 갚는 보험 등장”

9) 비즈니스워치(2018. 6. 11), “신용생명보험 속알이 ② 고사-회생 ‘갈림길’”

10) 비즈니스워치(2018. 6. 7), “신용생명보험 속알이 ① “꺾기 아닙니다””

11) 이데일리(2018. 7. 11), “꺾기 규제 부담에, 신용생명보험 30년째 유명무실”; 비즈니스워치(2018. 6. 11), “신용생명보험의 속알이”

-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대출담보물건 설정 등이 가능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대출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신용보험의 경우도 은행을 제외한 보험상품 판매자(설계사 등)가 대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가입 권유에 한계가 존재함
- 한편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 규제로 대출 승인 이후 고객의 상품가입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여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려움
- 금융당국은 대출창구에서의 꺾기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으로 규제완화에 미온적임

3. 주요국의 신용보험 운영 및 감독정책



- 소비자신용보험시장 규모가 미미한 국내 시장과는 달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상품(Consumer Credit Insurance: CCI)이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음¹³⁾

〈표 3〉 미국의 주요 소비자신용보험상품

상품유형	정의 및 보상범위
신용생명보험 (Credit Life Insurance)	채무자 사망 시 대출 및 신용거래를 통해 발생하였던 채무액을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상환
신용상해보험 (Credi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채무자가 약관에서 정의한 장애를 입어 대출 및 신용거래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액을 대신 상환
신용실업보험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채무자가 약관에서 정의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대출 및 신용거래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액을 대신 상환
신용재산보험 (Credit Personal Property Insurance)	개인의 신용거래를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담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

자료: NAIC(2001),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

-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신용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상품판매 관행,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추진하고 있음
-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는 상품설명 의무 준수 미흡, 채무자의 보험가입 사실 미인지 등 불완전

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3조(구속성 보험계약의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참조
13) 주요국의 신용보험 운영 및 감독정책은 〈별첨 1〉 참조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매자 교육 강화, 표준(핵심)설명서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상품판매 관행과 관련하여 교차판매 및 의무가입 관행, 상품판매시점, 소비자의 선택폭 제한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끼워팔기, Opt-out 판매 금지, 대출 발생 7일 후 상품가입,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폭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과도한 보험료 수준, 일시납 보험료 징수 구조 등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및 보험료 환불제도를 마련하고 보험료 및 수수료를 규제함
- 한편, 상품 특성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역선택(자살, 고의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한도 및 횟수를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를 규정함

〈표 4〉 주요국 신용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 장치

문제점	주요 내용	제도 개선 및 권고 사항
불완전 판매	· 상품설명 의무 준수 미흡(보장범위, 비용) · 채무자의 보험가입 사실 미인지	· 판매자 교육 강화 · 표준(핵심)설명서 제공: 프랑스, 호주 등
상품판매 관행	· 교차판매(Cross-Selling) 및 의무가입 관행 · 상품판매시점: 대출과 동시에 해당상품 가입 · 소비자 선택폭 제한(가입대상 보험회사 제한)	· 끼워팔기(Tying), Opt-out 판매 금지 · 대출발생 7일 후 상품가입: 영국(PPI) ·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폭 확대
보험료 및 수수료 적정성	· 과도한 보험료, 높은 판매수수료 · 일시납 보험료 징수 → 조기 대출상환 시 환급금	· 보험료 및 손해율 공시 · 조기 상환 시 보험료 환불: 스페인 등 · 보험료 및 수수료 규제: 이탈리아, 미국
역선택 문제	· 상품특성을 악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행태 - 자살보험금, 고의적 상해, 자발적 실업 등	· 신용실업보험: 지급한도, 횟수 설정 · 보험금지급 면책사유 규정

- 이 같은 신용보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 및 제도 개선으로 신용보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제고가 같이 이루어짐

4. 요약 및 시사점



- 주택담보대출 등 점증되는 가계대출 리스크가 국내경제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객(대출자)의 유가족 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심리적 불안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응

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노인의 치매, 고도 장애, 사망으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로 대두됨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신용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출고객(채무자)은 신용채무 상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및 장애 등에 따른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가 상속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불안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은행 등 대출기관(채권자)은 고객의 부채상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신용보험상품을 통해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시장 개척이 가능함
 -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표 5〉 신용보험의 주요 기능

채무자(대출고객)	채권자(금융기관)	보험회사	국가/사회
· 사고 시 대출금 상환보장 · 유족에게 채무상속 방지 · 개인신용하락 위험 방지	· 부실채권 방지를 통한 여신 건전성 확보 · 고객과의 관계 보호	· 신규상품 판매채널 확보 · 신시장 개척	· 가계재정안정 도모 ·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

- 이러한 신용보험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서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상품 판매 관행, 보험료 및 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짐
 - 2005년 영국의 지급보장보험(PPI) 불완전판매 스캔들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유럽 주요국의 신용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미흡, 끼워팔기(Tying) 관행에 따른 소비자의 회사선택폭 제한, 보험료의 적정성, 수수료의 투명성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음
 - 한편, 일본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고의적인 상해, 자발적 실업, 자살사고 등 신용보험상품의 특성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신용보험은 대출로 야기되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 역선택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용보험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꺾기 등 불완전판매 및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사망(자살 제외), 심각한 장애, 중대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가계대출의 상환에 관한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가산금리체계에 반영되므로, 사망 등 매우 특별한 발생확률의 사건에 대해 신용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요율산정 규제가 필요함
- 끝으로 불완전판매 및 역선택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첨부 1〉 주요국의 신용보험 운영 현황 및 감독정책

1. 미국

■ 미국 NAIC 소비자신용모델법(Consumer Credit Model Act)에서는 소비자신용보험을 보장 위험에 따라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 및 장애보험, 신용실업보험, 신용재산보험 등으로 구분함¹⁴⁾

-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 Insurance)은 계약자 사망 시 대출자의 대출 또는 신용거래로 생하였던 잔존 채무를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보상해주는 상품임
- 신용상해 및 장애보험(Credit Accident & Health or Credit Disability Insurance)은 질병 또는 사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회복 시까지 채권자의 채무액에 대해 약정된 월별 상환금을 대납함¹⁵⁾
- 신용실업보험(Credit Unemployment Insurance)은 계약자(차주)가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 당해 대출 또는 신용거래 채무액에 대해 약정된 월별 상환금을 대납하는 구조임¹⁶⁾
- 신용재산보험(Credit Property Insurance)은 소비자가 대출 및 할부신용을 통해 구입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수리·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임
 - 동 상품은 재산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채무변제능력의 변화와 관계없음

■ 최근 10년간 신용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효율인하 등으로 감소 추세이며 손해율은 50%를 하회하는 수준임

〈첨부 표 1〉 미국의 주요 신용보험의 시장 규모 및 손해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용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1,272	1,099	805	773	759	756	740	739	731	672
	손해율	42.7	45.3	45.1	47.6	47.0	45.7	47.7	47.6	45.2	44.2
신용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1,401	1,245	940	878	870	885	892	885	851	786
	손해율	36.8	40.3	43.5	45.2	41.8	41.2	36.7	34.9	33.8	32.4

자료: NAIC(2017),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 Health Insurance Experience", 각 연호

14) NAIC(2001), Consumer Credit Insurance Model Act; NAIC(2009), Credit Personal Property Insurance Model Act; 이상제(2006),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5) 주민정·조재현(2004),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6) 보험계약자가 출산, 간호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 또는 신용거래로 발생한 채무액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월별상환금을 대납해 주는 신용휴직보험(Credit Leave of Absence)상품도 있음. 신용실업보험과 신용휴직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신용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규제 및 수수료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¹⁷⁾

- 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 의무와 더불어 최저손해율제도(Minimum Loss Ratio)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설계 시 주보험감독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장애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의 적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요율(prima facie rate)을 신고하나, 대출자에 따라 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함

2. 일본

■ 일본의 경우 1960년대 들어 신용생명보험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자금대출금을 담보해주는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됨¹⁸⁾

- 1958년 자동차 할부판매대금을 담보하는 할부판매대금보험상품이 출시된 이후¹⁹⁾, 1960년대 중반 이후 가계자금의 대출금을 담보하는 개인대출신용보험상품 등이 개발되었고, 1966년부터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함²⁰⁾
 - 특히, 일본에서는 평균상환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장기대출이 많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하고 있음
- 대출자가 사망 또는 고도 장애상태에 놓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자의 채무(주택담보대출)를 대납해 주는 단체신용생명보험상품이 가장 일반적임²¹⁾
 - 단체신용보험상품은 취급기관에 따라 기구단체신용생명보험, 신용보증협회단체신용생명보험, 중앙노동은행단체신용생명보험, 일반금융기관단체신용생명보험으로 분류 가능함²²⁾
- 단체신용생명보험상품의 경우 특약을 통해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 채무를 면제해 주는 상품도 존재함
 - 예를 들어, 3대 질병 특약(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8대 질병 특약(3대 질병, 당뇨병, 고혈압, 간경변, 만성폐장염, 만성신장질환)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입 전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가 필요함

17) National Treasury(2014), "Consumer Credit Insurance Market in South Africa"; 이상제(2006),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8) 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

19) 이호영·박근홍·김영부(1998), 『신용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 이지연(2018. 7), "일본의 소비자 대출거래와 단체신용생명보험", 월간생명보험 473호, 생명보험협회

21) <https://www.hokennavi.jp/cont/column-knowhow-019/>

22) <https://www.hokenmarket.net/carna/detail/post128.html>

〈첨부 표 2〉 일본의 신용생명보험시장 규모(보유계약기준)

(단위: 천 명, 십억 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체신용 생명보험	피보험자	162,829	153,437	143,415	130,875	127,464	126,252	121,450	119,112
	가입금액	170,262	169,667	169,830	170,622	172,325	174,068	176,507	180,410
소비자신용 단체생명보험	피보험자	1,413	1,037	746	564	474	422	388	358
	가입금액	322	217	152	121	110	115	119	117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각 연호

■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고객들의 단체신용생명보험(Group Credit Life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 함²³⁾에 따라 시장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대출이자율에 포함되어 있으며, 질병특약 가입 시 대출금리에 추가됨
- 예를 들어, 주신네트은행(住信SBIネット銀行), 요코하마은행(横浜銀行), 후쿠오카은행(福岡銀行) 등과 제휴하여 판매하는 카디프생명의 단체신용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모기지 금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8대 질병을 포함시킬 경우 연 0.3% 금리를 추가함²⁴⁾
- 주택담보 대출 시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플랫35(フラット35)²⁵⁾ 상품의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됨²⁶⁾

■ 한편, 대출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생명보험의 가입을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의 역선택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

-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모르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제기됨
- 대출기관에서는 채무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실히 규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²⁷⁾
- 신용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에 금융청은 2006년 소비자신용단체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²⁸⁾

-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 중 자살을 원인으로 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 중 9.4%(회사별로는 4.5~2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3) 全国信用保証協会連合会(<http://www.zenshinhoren.or.jp/danshin/index.html>)

24) Gomez(2017. 6. 5), “多様化する団体信用生命保険と引受保険会社の提供する豊富な商品サービス”

25) flat 35(フラット35)는 민간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최장 35년 고정금리 상품임; <https://www.jhf.go.jp/loan/yushi/info/flat35.html>

26) http://jguide.me/real_estate/housing_loan/post-270/

27) http://www.homemate-research-insurer.com/useful/18567_facil_088/

28) 金融庁(2006. 9. 15),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への対応について”; 金融庁(2006. 10. 6),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の調査結果について”; 金融庁(2006. 11. 28),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の再調査結果について”

- 그러나 보험금 지급건수 중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60.6%에 달하고 있어²⁹⁾, 사인확정 보험사고 대비 자살사고 비중은 23.9%(회사별로는 13.3~33.3%)임³⁰⁾
- 자살사고로 인한 신용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14.2%로 병사(28.8%) 다음으로 높았으며, 건당 지불금액은 자살(87.1만 엔)이 병사 및 사고사(68.3만 엔)보다 높았음
- 이에 금융청은 카드로 대출 신청과 보험 가입 신청을 별도로 수행하도록 지도하고³¹⁾,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에게 충분한 설명 이행, 보험금 지급 시 유족에게 확인절차 수행 등 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엄격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³²⁾

〈첨부 표 3〉 보험사고 원인별 보험금 지급 실태(2006년 3월)

(단위: 건, 억 엔, %)

구분	사인 확정						사인 불분명	합계
	병사	자살	사고	고도장해	기타	소계		
계약건수	12,560 (24.2)	4,908 (9.4)	1,788 (3.4)	249 (0.5)	998 (1.9)	20,503 (39.4)	31,494 (60.6)	51,997 (100)
보험금	87 (28.8)	43 (14.2)	11 (3.7)	2 (0.6)	7 (2.4)	150 (49.6)	152 (50.4)	376 (100)

주: 1) 2006년 3월 말 기준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17개 대부 업체의 2005년도 실적임

2) 괄호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金融庁(平成18年11月28日), “消費者信用団体生命保険の再調査結果について”

3. 영국

■ 영국의 경우 부가보험(Add-on Insurance)³³⁾의 한 형태로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은 채무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및 각종 담보대출 채무를 대납해 주는 지급보장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이하 “PPI”)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음
- 지급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개인 및 기업대출, 신용카드,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 차량금융 등 기본 계약에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띠며, 1990~2010년 사이 총 6,400만 건이 판매됨³⁴⁾
- 한편, 자동차판매사의 경우도 신차 또는 중고차 판매 시 차액보험, 대출이행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음

29) 보험회사와 대금업자의 약관 상 일정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원인을 기재 한 문서의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함

30) 2005년도 일본 인구동태통계의 20~49세, 20~59세, 20~69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26.3% 15.5% 9.1%임

31) <https://www.cash-learning.com/blog/16574/>

32) http://www.homemate-research-insurer.com/useful/18567_facil_088/

33) 부가보험이란 특정 재화·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모집하는 보험을 의미함(송윤아(2017),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KiRi 리포트』, 제419호, 포커스)

34) FCA,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Explained”(https://www.fca.org.uk/ppi/ppi-explained)

- 차액보험(Guaranteed Auto Protection: GAP)은 자동차가 전파·도난 되었을 경우 차량용자잔액보다 자동차보험의 차량보상비가 적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하는 상품임
- 대출이행보험(loan Termination Insurance)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차량용자잔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용자잔액과 차량시가 간 차액을 담보하는 상품임

■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PPI의 불완전판매로 감독당국의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임

- 과거에 판매된 PPI의 경우 일시납보험료 형태로 대출금에 포함하여 지불하는 구조임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 수준을 인지하기 어렵고, 조기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받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였음³⁵⁾
- 이 같은 문제들로 2000년대 들어서며 PPI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발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국(Office of Fair Trade: OFT)과 금융감독청(FSA) 등은 PPI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반 조치를 마련함
 - 우선, 2011년 공정거래국의 경쟁위원회는 대출발생 7일 경과 이후 신용생명보험 판매 허용, 신용생명보험의 일시납 판매 금지,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권 부여 등 엄격한 PPI 취급 기준을 제시함³⁶⁾
 - 금융감독청은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판매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지를 위해 판매수수료 공시 지침을 마련함³⁷⁾
 - 한편, 금융감독청은 2014년 부가보험시장³⁸⁾ 조사를 통해, 부가보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Opt-out 방식³⁹⁾의 계약 금지, 손해율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함⁴⁰⁾

■ 영국의 PPI시장은 2000년을 전후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취해지면서 실적이 급감함

〈첨부 표 4〉 영국의 지급보장보험(PPI) 시장 규모

(단위: 천 파운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경과보험료	2,244,524	1,445,212	1,124,165	816,553	588,446	396,202
- 모기지 관련	536,487	478,935	433,064	378,305	319,549	226,464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35) 이정원(2017),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36) Competition Commission(2011),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Market Investigation Order 2011"; National Treasury(2014), "Consumer Credit Insurance Market in South Africa"

37) FSA(2013), "Final guidance: Risks to customers from financial incentives"; 정경영(2016),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38) FCA(2014), "General Insurance Add-ons Market Study"; FCA(2015), "General Insurance Add-Ons Market Study-Remedies: banning opt-out selling across financial services and supporting informed decision-making for add-on buyers"

39) Opt-out 방식이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상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형태를 의미함

40) FCA(2015), "Guaranteed Asset Protection insurance: competition remedy including feedback on CP14/29 and final rules"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⁴¹⁾ 조사 결과, 2005년 영국의 PPI에 대한 불완전판매 스캔들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지급보장보험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보장보험(Mortgage Protection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과거에는 대출과 동시에 해당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그러나 대출보장보험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끼워팔기 금지, 보험회사 선택에 관한 정보 제공), 대출보장보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설명서 제공, 판매자가 월보험료 수준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네덜란드의 경우 소비자신용보험의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부과, 지급보장보험에 대한 최대수수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스페인은 주택담보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잔여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호주

■ 호주의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이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상품이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신용생명보험(Life Credit Insurance)의 경우 자살, AIDS 등 특정 사인에 대해 보험금지급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 가입연령에도 제한을 두고 있음
- 장애 및 상해 신용보험(Disability, Accident and Sickness Credit Insurance)에 있어서도 장애지속 여부, 운동 및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면책규정을 설정하고 있음
- 신용실업보험(Unemployment Credit Insurance)의 경우 자발적 실업은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며, 최대 보험금 지급기간과 지급액 등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있음

〈첨부 표 5〉 호주의 소비자신용보험상품 유형 및 역선택 방지 방안

상품유형	주요 특징 및 보상범위
신용생명보험	· 피보험자 사망 시 - 면책조항: 자살, AIDS, 전쟁으로 인한 사망, 연령제한 · 최대지급금액: 30,000호주달러~50,000호주달러
신용 상해 및 장애보험	· 질병, 사고로 인한 단·장기 근로활동중단으로 인한 소득손실 발생 시 (일정기간 이상 장애가 지속되어야 함) - 면책조항: 운동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 발생, 기왕증 · 최대 월 지급액 1,750호주달러, 일시금 20,000호주달러~50,000호주달러

41)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2013), "Background Note on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신용실업보험	·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시(자발적 실업 제외) · 지급기간: 실업 후 통상 60~90일, 지급액: 월 600호주달러~750호주달러
--------	---

자료: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1998. 7), "Consumer Credit Insurance Review"

■ 2009년 이후 소비자보호단체(ACCC)⁴²⁾ 및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신용보험상품의 부적절한 상품 판매 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6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생명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에서 1억 호주달러 규모의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었음⁴³⁾
- 또한, 2016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자동차판매사에서 모집한 부가보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집 수수료와 보험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⁴⁴⁾
 - 소비자신용보험과 대출이행보험의 경우 대출발생과 동시에 일시납 보험료를 지급함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였음
- 이에 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화를 통한 소비자신용보험 판매 시 판매절차지침서(Formal Scripts) 비치, 소비자의 상품가입 동의서 확보, 상품판매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보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⁴⁵⁾

42)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1999), "Consumer Credit Insurance Review"

43) ASIC(2016. 10), "REPORT 498: Life Insurance Claims: An Industry Review"; 전용식·정인영(2018),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35호, 이슈분석

44) 2013~2015년 기간 동안 보험회사 자동차판매사에게 제공한 수수료 규모는 6억 200만 달러인 반면, 동 기간 중 소비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1억 4,400만 달러로 수수료의 25% 수준에 불과함; ASIC(2011), "Consumer Credit Insurance: A Review of Sales Practices by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ASIC(2016), "The Sale of Life Insurance through Car Dealers: Taking Consumer's for a Ride"; ADIC(2016), "A Market that is Failing Consumers: The Sale of Add-on Insurance through Car Dealers"

45) ASIC(2011), "Consumer Credit Insurance: A Review of Sales Practices by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